

논 단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최 중 범\*

## I. 서론

우리나라 우정사업<sup>1)</sup>은 지난 '80년대 커다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편 물량의 증가, 우정관서의 증설, 우정업무의 기계화 추진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대 등이 그 성장의 증거라면, 우편센서스 등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우편이용주체의 급격한 변화, 통신문 내용의 성격변화 등에 따른 우편의 기능변화, 우편사업분야의 경쟁환경 조성 등이 그 변화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이같이 커다란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지의 적자라는 고질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치 못하고 있다. 우정사업의 수지적자 문제는 1982년 전기통신부문이 체신부로 부터 분리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독립함으로써 실체화된 이래 우정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으며,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운영에 수용된 부분은 미약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또한 사실이다. 결과로 우정사업 수지적자는 '90년대 들어서면서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게 되어 더 이상 방치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우정사업의 적자문제를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관한 다툼이다.

우정사업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1840년 영국이 우편개혁을 통해 공평성과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우편제도<sup>2)</sup>를 확립한 이래 대부분 국가에 있어 우편사업운영의 이념적 지주가 되어 왔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우정사업운영 일반원칙에 있어 우정사업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 통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 1) 우정사업은 일반적으로 체신부의 3대 사업인 우편사업, 체신금융사업, 그리고 수탁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나, 이 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협의로 해석하여 우편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2) 근대우편의 공평성과 개방성에 관하여는 최 중범,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 우편의 특성과 미래」, 『통신정책연구』 제 6권 1호, 통신개발연구원, 1991. 봄. pp. 79-80. 참조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봉사업무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 상호간의 인격적, 교육적, 문어적, 업무적 교신을 통하여 국민통합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정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거주지역 또는 소속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우편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산간지역과 소규모 촌락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더 할 수 없이 효과적이고 정규적인 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공통점<sup>3)</sup>이 발견된다는 점은 바로 우정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의 구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편법도 그 제정 목적에서 “이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천명하고 있으며,<sup>4)</sup>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동법 제 2조 1항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함으로써 그 사업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엄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운영에 있어 효율성 보다는 공공의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사업의 기업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사업수지 적자도 이같은 기업성 측면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구체적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커다란 적자의 근인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강조에 따른 사업의 비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 지닐 수 있는 조직 내부로부터 기인하는 비효율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하에 우정사업에 가해지는 조직외부로부터의 다양한 공적통제에 따른 사업운영의 자율성 제약에 기인하는 비효율에서 찾을 수 있다.<sup>5)</sup>

이에 체신부는 우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우정사업 수직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각종 공적 통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원 우정정책연구실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정사업의 경영

3) 구 광모, 한국우정기관의 발전방향 - 공사화는 타당한가?-, 한국통신학회, 1989.

4) 우편법 제 1조

5) 이와 관련하여 우편사업의 정부기업 형태로의 운영이 지니는 문제와 한계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비효율성에 관해서는 최 중범, 「정부기업으로서 우편사업」, 『통신정책연구』 제 6권 4호, 통신개발연구원, 1991. 겨울. 참조

합리화를 위한 연구<sup>6)</sup>를 작년에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체신부의 후원 아래 지난 7월 10일 사계의 권위자를 모시고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글은 상기 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 II. 행사 개요 및 주제발표내용

### 1. 행사개요

지난 7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학술발표회」는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었다.

동 학술발표회에서는 본원 우정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인 이 진용 박사와 경희대 법대의 박 윤훈 교수가 각기 「우편사업의 현황과 운영실태」, 「우편사업의 기업성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 훈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김 영평 교수, 연세대 김 지홍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 연천 교수, 동국대 장 오현 교수, 그리고 경희대 정 혜영교수 등이 상기 주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상기 행사에서 발표된 이 박사와 박교수의 논문은 현재 우정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운영상의 제반 문제(특히 사업수지의 적자문제)가 주로 사업운영의 자율성 제약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원의 이 진용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정사업 전반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 토대한 사업운영상의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전기통신 관련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타 통신수단과의 경쟁관계 심화, 통신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도래,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개성화·고급화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의 필요성 증대, 우편이용주체의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통신문의 성격변화<sup>7)</sup>등의 환경변화와 급속한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부담의 가중과 서비스

6) 이 진용 외 2인, 우정사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합리화 대책, 통신개발연구원, 1991.

7) 1982년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우편센서스 결과 1982년과 1991년을 비교할 때 통상우편물에 있어 발송주체로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서 26%로 급속히 줄어든 반면 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74%로 증가하여 우편이용주체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통신문의 성격도 소식·인사·안부 등 인격적인 내용에서 업무·상품광고 등 비인격적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 II. 행사 개요 및 주제발표내용

### 1. 행사개요

### 2. 간추린 발표내용

### 2. 간추린 발표내용

품질의 저하, 우편요금의 비현실적 조정  
에 따른 낮은 원가보상과 이로 인한 사  
업 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등 산적한  
문제와 직면해 있으나 광범위하게 발견  
되는 사업운영의 자율성 제약으로 인해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sup>8)</sup>

아울러 이 박사는 우정사업 경영관리  
체제의 미흡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현재  
의 관리체제로는 현실의 정확한 평가 및  
판단이 어려운 지경으로 우정사업의 운  
영개선을 도모함에 있어 '기침이 난다고  
하여 감기약을 투여하는' 식의 극히 대  
중요법적인 대안 밖에 제시될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적  
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박사는 사업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조직의 운용과 인사제도, 요금의  
결정과 상품의 편성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관계법령 등  
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운영의 권한을 사  
업관장자인 체신부장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적이고 탄력  
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는  
동시에 사업관리 측면에서 현황에 관한  
치밀한 자료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한  
조직·인사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의  
기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사  
업운영체제를 갖추는 등 효율적인 우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희대학의 박 윤훈 교수는 주제발표  
를 통해 우정사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

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정사업에  
있어 보다 신장된 운용상의 자율성이 보  
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례의  
설치를 주장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특례  
조항을 설정·제시하였다.

발표과정에서 박 교수도 지적하였듯  
이 그간 우정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둘러  
싸고 현재 우정사업이 지닌 문제점 분석  
과 개선방안의 제시 등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논의나 연구의 결과 제시된 우정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정비 부  
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논의나 연구  
의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금번 박 교수에 의한 법률 수  
준의 구체적 특례조항 제시는 그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이 박사의 발표를 비  
롯한 우정사업 효율화 방안 관련 연구성  
과의 현실화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정비  
방안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자  
못 의의가 크다 하겠다.

현재 정부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  
정사업의 예산운영은 그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예산  
회계법에 의해 규율받음으로써 몇 몇 특  
례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교  
수가 제시한 것과 같은 새로운 특례규정  
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은 기업예산회계  
법에서 다루는 특례의 내용이 예산의 운

8) 우정사업 운영에 있어 자율성 제약에  
관한 사항은 학술행사의 Proceeding  
과 이 진용외 2인의 전제서 및 최 중  
범의 「정부기업으로서 우편사업」 참  
조.

용에 국한되며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 시된다는 점<sup>9)</sup>뿐만 아니라 동법이 그간 수 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1961년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법제정 당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재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므로써, 동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박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공사화의 추진과 같은, 특례규정의 제정보다 좀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 우정사업이 나타내고 있는 적자규모라던가 공사화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노사관계의 불안정, 방만 경영에 따른 내부적 비효율의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다소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영사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기업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특례규정의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특례규정은 조직 및 인력운용, 요금조정, 예산의 편성과 운영, 성과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술발표회의 Proceeding을 입수할 수 없는 독자를 위해 박 교수가 제시한 특례규정 내용을 다음에 정리해 보았다.

### 3. 박 교수가 제안한 특례규정의 내용

#### 가. 체신현업관서의 범위

특례의 적용을 받는 “체신현업관서”라 함은 체신부장관의 제2차 이하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 나. 체신현업관서의 정원과 직제

① 체신현업관서의 설치는 공무원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의 기업적 자율경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다른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체신현업관서의 정원중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할 수 있다.

#### 다. 우편요금의 결정

우편요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전년도 우편사업 부문의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2. 우편요금평균 인상률이 직전인상시 중첩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3. 년 2회이상 우편요금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 라. 예산의 편성

①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중 체신현업관서의 예산편성지침은 체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회계법 제28조에 의하여 체신현업관서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체신부장관의 예산요구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

3. 박 교수가 제안한 특례규정의 내용

9) 이 진용의 2인, 전게서, pp. 101-102.

산총액은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예산의 배정**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회계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현업관서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체신부장관의 예산배정요구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자금계획의 경우도 또한 같다.

**바. 초과수입금의 사용**

① 통신사업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외에 모든 우정사업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예비비의 사용**

체신부장관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유·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예산의 이월**

경제기획원장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고정자산의 점용허가**

체신부장관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소관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차. 경영성과수당**

① 체신현업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경영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영성과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Ⅲ. 토론내용의 요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표회에서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사업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이를 위한 특례규정의 제정에 관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의 중심도 자연 현재 우정사업에 가해지는 공적 통제가 야기하는 문제와 자율성 신장에 따라 기대 또는 우려되는 사안들에 초점

Ⅲ. 토론내용의 요약

이 모아졌다.

### 1. 자율의 신장과 책임의 강화

글의 서론에서 정리하였듯이 사업수지의 적자를 위시하여 현재 우정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근인은 공공의 이익 보장의 차원에서 동 사업에 가해지는 공적 통제에 따른 운영상의 자율성 제약과 이로부터 기인하는 비효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고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두편의 논문도 이러한 기초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토론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토론자도 이러한 일반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자 대부분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공공성의 유지를 위해 사업운영의 효율성 저하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사업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은 결코 공익에 부합될 수 없으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발표된 두편의 논문에서와 같이 사업운영의 효율성제고의 전제로서 운영상의 자율 신장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자율의 신장이 곧바로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조심스러운 우려 또한 개진되었다. 즉 자율의 보장이 효율적 사업운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율의 신장만을 강조한 채 그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하는 책임의 강화를 소홀히 한다면 자율 확대에 따른

더 큰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의 제약에 따른 비효율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아울러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자율이 보장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제도의 확립이 요망된다.

### 2. 특례법과 기본법

박 교수의 특례규정 제시와 관련하여 토론중에 이같은 내용은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칭 「우정사업 관리 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삽입을 통해 예외적 조치가 아닌, 뚜렷한 사업운영방안에 대한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이같은 의견은 박 교수의 제안이 자칫 그 존속 근거가 매우 약화된 기업예산회계법의 특례규정 설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상당부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이건간에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협상과 절충을 거쳐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과의 의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정사업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기본법의 형태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자칫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될 수 있다. 박 교수가 발표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특례의 내용이 기존의 체제에서 볼 때 직접 관련이 되는 경제기획원이나 총

- 1. 자율의 신장과 책임의 강화
- 2. 특례법과 기본법



무처와 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조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완곡한 형태로 손질되었다고 실토한 것 처럼 우정사업 운영체제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정치적 과정이라 하는 것은 결코 경시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제도정비를 도모함에 있어 촛점은 형식보다는 담겨지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실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도록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 3. 공공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인식

이제까지 우리는 우정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매우 쉽게 하여왔다. 그러나 과연 공공사업으로서의 우정사업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는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편서비스의 원가보상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이로인해 우정사업이 커다란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과연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로 촛점이 모아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양상을 띠 수도 있다.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정사업의 적자문제가 일반회계의 보전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은 상당한 왜곡을 초래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보호의 효과가 국민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가

는 것이라면 우정사업 적자문제의 심각성은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의 효과가 일부에 편중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더우기 최근 우정사업이 우편이용주체의 급격한 구조변화 현상과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보호대상의 규명은 상당한 의미와 파장을 지닌다 하겠다.

즉 우정사업의 적자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우편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정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4. 우편서비스 요금의 현실화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논의함에 있어 관심의 촛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편서비스 요금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이 박사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0.01%의 비중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국내우편요금의 조정을 물가안정 측면에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우편요금의 조정에 있어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하도록 하는 특례의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첫째는, 우편요금 조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

- 3. 공공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인식
- 4. 우편서비스 요금의 현실화

는 물가지수항목의 구성비로서는 읽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요금조정과정의 외부적 통제를 완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후 평가제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미국의 우편요금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와 같이 민간으로 구성되는 요금심의위원회의 조직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둘째는 박 교수의 「우편요금의 결정」과 관련된 제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가안정위원회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할 경우 과연 이러한 특례의 인정이 우정사업 적자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충격을 일시에 흡수한다는 취지에서 한 번 정도의 대폭적인 요금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편요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우편요금의 조정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맹목적인 저가주의는 과잉수요를 유발하여 사회 전체적인 낭비를 초래하며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 IV. 결론

이상으로 지난 7월 개최되었던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발

표회」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신장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동 행사의 진지한 분위기와 논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는 매우 일반적이고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의 결과가 사업운영에 반영되어 실제적인 효과를 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는 박 교수가 지적한대로 개선의 방향만 제시되었지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어찌보면 이를 추진할 엄두도 못내온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작금의 우정사업을 둘러 싸고 있는 사업환경의 변화와 사업운영 조직 내·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비효율의 지적은 우정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변모 노력을 요구한다.

금번의 학술행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응의 시작이라 하겠다. 지금은 이러한 시작을 밑거름으로 하여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때이다.

#### 〈참 고 문 헌〉

1. 구 광모, 한국우정기관의 발전방향—공사화는 타당한가?—한국통신학회, 1989.
2. 이 진용 외 2인, 우정사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합리화 대책, 통신개발연구원, 1991.

3. 최 중범,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 우편의 특성과 미래」, 『통신정책연구』 제 6권 1호, 통신개발연구원, 1991. 봄.
4. \_\_\_\_\_, 「정부기업으로서 우편 사업」, 『통신정책연구』 제 6권 4호, 통신개발연구원, 1991. 겨울.
5. 통신개발연구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학술발표회」 Proceeding, 1992.